

「퇴직연금 정기예금」 핵심 상품설명서

▶ 기본정보

최고금리	연 1.59%(DB, 세전) 연 1.49%(DC/IRP, 세전)	▶ DB: 5년제, '21.03.15 기준 ▶ DC/IRP: 5년제, '21.03.15 기준 · 상세 금리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금융기관)		
가입기간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중 택일 (만기지정식으로 가입시 3개월~ 5년미만에서 일단위 지정가능)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재예치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재예치		
일부해지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예금담보대출	X	퇴직연금제도 내 운용되는 상품	
예금자보호	△	DC/IRP에 한하여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DB는 예금자보호 불가	

▶ 유의사항

※ 상품 관련 특약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상품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우리은행 영업점 혹은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제한 등록 불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특별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등 ▶ 특별중도해지시 이자율 · (예)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 거치식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 주요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은 ①만19세 미만 미성년자 ②피성년 후견인 ③피한정 후견인 ④만65세 이상 개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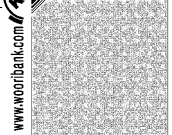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퇴직연금 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자세한 내용은 약관, 수령하시는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 상세조회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가입자격	▷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가입금액	▷ 제한없음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이상 5년 미만에서 지정		
기본이자율 (세금납부 전, 연이율, %, 2021.03.15. 기준)	▷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계약기간	DB 금리	DC/IRP 금리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0.60	0.5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0.70	0.60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0.75	0.65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0.99	0.89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07	0.97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1.15	1.05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1.23	1.13
	36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1.31	1.21
60개월 이상	1.59	1.49	
※ 신규(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방법	▷ 예금가입금액 × 계약기간별 연 이율 × 일수 / 365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원금 또는 이자 지급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지급제한 등록 불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금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일반중도해지 이자율

- ▷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만기앞당김 지급" 적용되지 않음)
※ 기본산식 : 신규(또는 재예치)시점 기본금리×(반영률)×(보유일수/계약일수)

보유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9개월미만	9개월이상~ 11개월미만	11개월이상
반영률	50%	70%	80%	90%

보유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최저이율	연0.1%	연0.1%	연0.15%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9. 수수료의 징수
10.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 ▷ 신규일 (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기간 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한다.
1.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1년 이하 : 기간별 약정금리
 - 계약기간 2년 :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3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 계약기간 5년 : 2년 미만 예치시 1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년 이상 3년 미만 예치시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3년 이상 예치시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약정금리
 2.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계약기간 2년 미만 : 기간별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단, 6개월 미만은 3개월,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6개월, 9개월 이상 1년 미만은 9개월, 1년 이상 2년 미만은 1년을 계약기간으로 본다.
 - 계약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제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별중도해지이율
-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한다.

만기 후 이율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분할 지급 (일부 지급)	▷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1.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만기재예치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만기지정식 퇴직연금 정기예금 : 가입자가 신규시 지정한 상품으로 재예치하고, 신규시 지정한 상품이 없을 경우 원 계약일수 만큼 동일상품으로 재예치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과 최초 수수료 납부일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등(우편 또는 팩스, 전화, 전자우편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전자우편은 제외), 그 밖에 은행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DC / IRP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비해당	확정급여(DB)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